

일반설계공모 시행공고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일반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19일

법원행정처 분임재무관

1. 사 업 명 :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청사 신축 설계용역
2. 사 업 시 행 기 관 : 법원행정처
3. 사 업 주 요 내 용
 - 가. 위 치 : 남양주시 지금동 229-21대 일원
 - 나. 대 지 면 적 : 18,000m²
 - 다. 건축 연면적 : 19,835m² 이내
 - 라. 설계 용역비 : (총차) 1,471,000,000원, (1차) 513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 - 마. 설계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450일
4. 응 모 자 격
 - 가.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
 - 나. 공동이행방식 공동 응모도 가능함(단,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함)
5. 현장 설명 및 응모 등록
 - 가. 일 시 : 2017년 7월 28일(금) 14:00
 - 나. 장 소 :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1층
 - 다. 현장설명 참가자격 :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
 - 라. 제출서류(현장 설명 및 응모 등록 시)
 - ① 응모등록증(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)
 - ② 건축사 업무신고필증·대표건축사 자격증 사본(공동 응모일 경우 각각 제출) 각 1부
 -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(공동 응모일 경우 각각 제출) 각 1부
 - ④ 대표건축사 신분증 사본(위임받은 건축사일 경우 :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, 건축사자격증 사본 각 1부)

⑤ 공동응모일 경우 : 공동응모협정서, 대표건축사 선임계, 공동참여자 명단(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) 각 1부

※.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에 날인

마.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며, 공동 응모할 경우 현장설명 참가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

6. 질 의 회 신

가. 질의서 접수일 : 2017년 8월 4일(금) 09:00 ~ 17:00

나. 회신방법 : -.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일괄 작성하여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(<http://www.scourt.go.kr/scourt/index.html>)에 게재합니다.

- . 실행 순서 : 대국민서비스/공고/계약입찰공고에서 '남양주'로 입력 후 검색을 실행하여 다운

7. 작 품 제 출

가. 제출 기간 : 2017년 10월 24일(화) 14:00 ~ 17:00

나. 제출 장소 :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술담당관실

(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, 대법원청사 동관 543호,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)

다. 제출 도서 : 현상설계 공모지침에 의함

8. 심 사

가.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 관한규칙에 의함

나. 심사위원은 2017년 10월 25일(수)까지 공개 예정임

9. 심사 결과의 통지

당선자 및 입상자에 한하여 문서로 개별 통지

10. 참 가 보 수

가. 당 선 자(1점) :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

나. 입 상 자(2점) : 40,000,000원, 30,000,000원 지급

※. 작품 제출 수가 3점 이하인 경우 입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5점 이하인 경우 입상자를 1점만 선정함(33,000,000원 지급)

11. 기 타 사 항

가. 현장설명 및 응모등록 시 필요한 자료(현상설계 공모지침, 응모등록 양식 등) 및 약도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<http://www.scourt.go.kr/scourt/index.html>) 대국민서비스/공고/계약입찰공고에서 '남양주'로 입력 후 검색을 실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 (검색한 파일 중 확장자 PDF파일은 첨부된 Acrobat Reader를 다운받아야 문서를 볼 수 있음. 응모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응모 등록 시 제출 바람)

나. 현장설명 시 부지현황도 및 현상설계 공모지침 등의 자료는 별도 배부하지 않으니 사

전에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공동 응모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현장설명 참가 및 응모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.

라. 설계공모 당선자(계약자)는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(전기·소방 등)을 갖추어야 하며,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(분담이행방식)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-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
-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(전기·기계)을 등록한 업체
-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각 해당분야(도시계획, 설비, 구조, 토질·지질, 조경, 정보통신)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각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

마. 설계용역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- ①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법,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)에 따른 심의·협의·인가·용역손해배상보험 등 행정수속 대행과 그에 따른 비용
-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관련 비용
- ②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, 녹색건축물 예비인증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지질조사 일체 비용(수수료 포함)

※ 단,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따른 비용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물 본인증 비용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바. 본 용역은 『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』(2015.7.10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05호) 및 『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』(2016.7.22. 조달청훈령 제1746호)에 따라 설계용역 사후(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시)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.

12. 문 의 처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술담당관실(전화 : 02-3480-1439) 담당자 : 이 미 립